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90,659,783	23,719,793
일반회계	692,319,153	20,769,575
특별회계	98,340,630	2,950,219
공기업특별회계	73,632,683	2,208,98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4,235,233	1,027,05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39,397,450	1,181,924
기타특별회계	24,707,947	741,238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594,763	47,843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2,050,042	61,501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87,823	17,635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5,862,505	475,875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3,837,270	115,118
지하수특별회계	775,544	23,266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,751,811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